

제 2023 - 4호

「종로1234가동 자치회관 운영세칙」을 개정함에 따라 그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종로1234가동 주민자치회관 운영세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3년 3월 7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2·3·4가동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서울특별시종로구 종로1·2·3·4가동 자치회관 운영세칙

- 세 칙 제 정 : 2000.12.04.
- 1 차 개정 : 2001.03.20.
- 2 차 개정 : 2001.07.24.
- 3 차 개정 : 2002.07.16.
- 4 차 개정 : 2004.09.10.
- 5 차 개정 : 2009.07.16.
- 6 차 개정 : 2010.09.24.
- 7 차 개정 : 2011.04.14.
- 8 차 개정 : 2013.03.22.
- 9 차 개정 : 2013.06.17.
- 10차 개정 : 2015.04.20.
- 11차 개정 : 2016.01.18.
- 12차 개정 : 2017.06.21.
- 13차 개정 : 2017.11.08.
- 14차 개정 : 2018.01.10.
- 15차 개정 : 2019.01.09.
- 16차 개정 : 2021.01.06.
- 17차 개정 : 2023.03.07.

종로1·2·3·4가동

종로1·2·3·4가동 자치회관 운영세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자치회관 관리·운영 및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등) 자치회관은 동주민센터에 설치하고 명칭은 종로1·2·3·4가동 자치회관으로 한다.

제3조(프로그램 수강신청 및 접수) ① 자치회관 운영 프로그램 수강 신청은 분기별 지정된 접수기간에 하되 프로그램 운영상 지장이 없는 경우 월별 또는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프로그램별 수강 신청시 수강료를 징수하고 수강증을 발급한 후 신청자 현황을 접수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등) ①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과 범위 내에서 사용료의 경우 동장이, 수강료의 경우 위원회가 별표로 정한다.
② 징수한 사용료는 구 세외수입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정의 징수결의를 거친 후 다음날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수강료 수입금 중 100%이내에서 유급강사 강사료, 자치회관 운영요원 인건비, 각종 공과금, 자치회관 시설 유지비 등 경비로 지출할 수 있다.<신설 2004. 09. 10>

제5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환불) ① 사용료 반환은 시설·장비 사용

전에는 전액 환불하고 사용 개시 후에는 환불되지 않는다.

② 수강료 환불은 프로그램 개시 전에는 전액 환불하며 프로그램 개시 후에는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제6조(이용 등) 동장은 자치회관의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 등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경우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서 그 비용을 지출한다.

제7조(수당 및 실비 보상 등) 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실비 보상 금액 중 급량비는 공무원 특근 매식비 단가 범위 내에서 교통비 등은 최소한 실비를 산출하여 지급한다.

②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강사수당은 1시간당 15,000원, 월10시간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수강인원이 15명 미만일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수강료에서 지원되는 강사수당은 수강료 수입금의 80%를 지급하고, 예산 지원금을 포함하여 총5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강사료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하며, 무단 결강 시에는 강의 출강률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지급일은 익월 초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4.20.><개정 2017.6.21.><개정 2019.1.9.><개정 2023.3.7.>

제8조(수강료의 지출 등) ① 수강료의 지출은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며, 지출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프로그램 강사료

나. 자치회관 시설개선 및 장비 등의 구입비

다. 프로그램 운영 자재 및 재료 등의 구입비

라. 자치회관 자원봉사자 및 운영요원의 봉사활동비 등

- 마. 프로그램 전시회 및 발표회 관련비용
- 바. 프로그램 운영세미나 및 시연회 등의 개최경비
- 사. 공공요금 및 일반운영비
- 아. 위원회에서 의결한 기타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

제9조(분과위원회)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위원회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3개 분과위원회를 두며 그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운영분과위원회

- 가. 자치회관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 나. 방문교류(대외 협력사항)에 관한 사항
- 다. 다른 분과위원회에 분장되지 아니한 사항

2. 복지분과위원회

- 가. 저소득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
- 나. 자원봉사자 모집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다. 청소, 청소년지도, 자율방범활동 등 지역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3. 문화·체육분과위원회

- 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나. 문화예술 활동지원 및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 다. 마을체육대회 등 건강·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②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하여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과 협의를 거쳐 지명하거나 각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각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장이 소속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총무 1인을 둔다. <개정 2018.1.10.>

제10조(공개 등)다음 각호의 공개사항은 공고 게시 등의 방법으로 5일 이상 공개한다.

1.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의 수입·지출내역
 -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
2.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 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신규 위촉 포함)
3. 기타 동장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개하고자 할 사항

제11조(월례회의) 월 1회 개최하는 위원회 정기 월례회의는 매월 첫째주 화요일로 한다. 단, 법정 공휴일인 경우는 그 익일로 한다.

〈개정 2017. 11. 8.〉

부 칙(2001. 3. 20)

이 운영세칙은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7. 16)

이 운영세칙은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9. 10)

이 운영세칙은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7. 16)

이 운영세칙은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9. 24)

이 운영세칙은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4. 14)

이 운영세칙은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3. 22)

이 운영세칙은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6. 17)

이 운영세칙은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4. 20)

이 운영세칙은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 18)

이 운영세칙은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6. 21)

이 운영세칙은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1. 8)

이 운영세칙은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 10)

이 운영세칙은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 9)

이 운영세칙은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 6)

이 운영세칙은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3. 7.)

이 운영세칙은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 1. 1.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별표>

□ 사용료 등 감면 기준

구 분	감면 비율	대 상	비 고
사용료	100%	◦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호주의 원칙 적용) ◦ 종로구 및 종로구의회가 주관하는 행사 ◦ 법령 및 조례 등에 근거한 비영리 직능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50%	◦ 구위선양과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행사 ◦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수강료	10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 및 의사상자 가족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 가장	
	50%	◦ 65세 이상 어르신	
		◦ 「서울특별시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종로구
주소를
가진
사람으로
1명당
2강좌에
한함

<개정 2023. 3. 7.>

사용료 등(제4조 관련)

□ 사용료 및 수강료

구분	단위	면적	상한금액	사용장소	비고
사용료	1회 1시간	50㎡미만	10,000원		부대시설포함 평일 야간, 주말, 휴일 25%가산
		50㎡이상 100㎡미만	15,000원	강의실2	
		100㎡이상 150㎡미만	20,000원	강의실1	
		150㎡이상 200㎡미만	25,000원		
		200㎡이상	30,000원	대강당	
수강료	월		50,000원	1인1프로그램	

〈개정 2004. 09. 10〉〈개정 2017.6.21.〉〈개정 2018.1.10.〉

※ 사용료는 최초 1시간으로 하고 1시간 초과 30분마다 25%를 가산한다.

※ 평일야간 이용시간은 18시에서 21시로 한다.

※ 수강료 환불은 프로그램 개시 전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나 프로그램 개시 후에는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